

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6. 26.(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바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 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-30차 전원회의(2009.7.9),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1.14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2011.3.21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- 의결 사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2호에 따른 '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'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-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사 - (2012-35(서)-128)

- 「방송법」 제77조제1항에 의거,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승인내용 >

종합유선방송사업자	상 품 명	변경사항	상품내용
(주)씨제이헬로비전 계열 15개사*	플렌티	신 설	묶음채널수 156개
(주)씨제이헬로비전 계열 18개사**	드라마, 스포츠팩	신 설	묶음채널수 12개
	HD팩	신 설	묶음채널수 20개
(주)씨앤엠 계열 16개사***	HD이코노미	신 설	묶음채널수 111개
JCN울산중앙방송(주)	경제형	신 설	묶음채널수 161개
(주)신라케이블방송	에 듀	신 설	묶음채널수 47개
	이코노미	신 설	묶음채널수 82개
	유료채널 및 데이터방송	신 설	VIKI 및 키즈톡톡 등

* (주)씨제이헬로비전 계열 15개사 : (주)씨제이헬로비전, (주)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충북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경북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부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

** (주)씨제이헬로비전 계열 18개사 : 상기 (주)씨제이헬로비전 계열 15개사* 및 (주)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, (주)신라케이블방송

*** (주)씨앤엠 계열 16개사 : (주)씨앤엠, (주)씨앤엠중랑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송파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중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초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노원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동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마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북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용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

나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- (주)씨앤엠 등 16개사 - (2012-35(서)-129)

- 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씨앤엠 등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설 변경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종합유선방송사업자	변경사항	신청 주요내용
(주)씨앤엠 계열 16개사*	운용채널 및 시설변경	노후장비 교체 및 디지털방송 서비스 확대 에 따른 장비추가 등

* (주)씨앤엠, (주)씨앤엠중랑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송파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중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초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노원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마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북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동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용산케이블티브이

다. 공익채널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및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

- (2012-35(서)-130)

- 공익채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방통위 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애인 복지채널이 의무 송출 채널로 추가됨에 따라 공익채널과 중복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성 방송분야(고시)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

- (신청서류)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류를 구체화하여 공익채널 선정신청서,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(안 제27조제1항)
- (사업계획서)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,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성 (안 제27조제2항)

② 공익성 방송분야(고시) 개정안 주요 내용

- 불필요한 예시 삭제를 통해 전문편성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종교 및 장애인 복지채널의 전문편성 내용 제외

○ 향후계획

- 관보 게재 후 시행

라. 「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」 (고시) 제정에 관한 건

- (2012-35(서)-131)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4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통신중계서비스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자, 종류와 제공범위 등 (안 제4조~제7조)

- (통신중계서비스 이용자 등) 청각·언어장애인이 장애인 또는 일반인과 문자(메신저, SMS 등)나 영상(인터넷, 휴대전화 등)을 통해 중계서비스 이용
- (통신중계서비스 제공범위) 국내통화, 한국어 음성과 문자 및 한국수화에 대한 중계를 원칙으로 하며, 연중무휴(365일 24시간) 제공

② 기간통신사업자 역할, 통신비 부담기준 등 (안 제10조~제11조)

- (통신사업자 역할) 기간통신사업자는 센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등을 부담하고, 센터 중계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에 협조

- (통신비 분담기준) 검증 완료된 사업자 영업보고서의 전화서비스 매출액 기준, 전체 사업자 매출액 중 자사 매출액 비율대로 비용 분담

③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3조~제16조)

- (통신중계서비스센터 설치·운영)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고, '한국정보화진흥원'에 위탁하여 운영
- (통신중계서비스센터 업무, 운영예산) 통신중계서비스 계획수립, 기술개발, 분담금 관리 등을 수행하고, 운영예산은 방통위가 예산범위에서 지원

○ 향후일정

- 관보게재 및 시행 : 6월 29일(예정)

마. 「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

- (2012-35(서)-132)

-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요금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·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(안 제3조)

- (고지의 주체) 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·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(MVNO)의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
- (고지의 상대방)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함

② 고지대상 서비스 (안 제4조)

- 전체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'빌쇼크' 우려가 큰 이동전화, 휴대인터넷(WiBro), 국제전화 및 국제로밍서비스를 고지대상 서비스로 함
- 일반 이용자보다 주로 사업자·기업이 특수목적으로 이용하고 '빌쇼크' 우려가 크지 않은 주파수공용통신(TRS), 무선데이터통신, 무선통신, 위성휴대통신 등은 고지대상 서비스에서 제외

③ 고지방법 (안 제5조)

- 문자메시지,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

- 이동전화서비스는 음성·문자메시지·데이터서비스별로 요금한도 접근시 1회 이상, 한도초과 즉시 고지

·‘빌쇼크’ 우려가 큰 데이터서비스(국제데이터로밍 포함)는 한도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 단위로 지속적으로 고지

- 제3자(국제전화사업자 및 해외사업자)로부터 과금자료를 넘겨받아 고지하여야 하는 국제전화 및 국제음성로밍서비스는 월 1회 고지
- 와이브로(WiBro)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데이터서비스에 준하여 고지

④ 기타 차단서비스 제공 등 (안 제6조)

- (차단서비스) ‘빌쇼크’ 우려가 큰 국제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,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
- (로밍정보제공)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
- (콘텐츠이용료) 애플리케이션, 주문형 비디오(VOD), 게임, 음원 등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

○ 향후 일정

- 관보게재 및 시행 : 7월 18일(예정)

바. 「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

- (2012-35(서)-133)

-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「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고시 재검토 기한을 2012년 7월 9일에서 2015년 7월 9일로 변경함

○ 향후일정(안)

- 관보게재 및 시행 : '12. 6. 29.(예정)

사. 제18대 국회 폐기법안 일괄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35(서)-134)

- 제28차 위원회('12. 5. 21) 보고 후,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제18대 국회 폐기법안(방송법, 전파법, 전기통신사업법) 일괄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방송법 (5. 21 위원회 보고내용과 동일)

-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「외주제작사」 추가
-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
-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규정 (시행령 규정 → 법률에 상향입법)
-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능 방송사업자의 사전 고시

② 전파법 (부처협의 결과 반영)

- 주파수 사용승인을 안보 목적 또는 국제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, 관련 기준 및 절차 마련
- 「전자파인체보호센터」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(부처협의 결과 반영 내용)
- ※ 위원회 보고 후 주요 변경사항 :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‘한국전자파문화재단’ 설립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, ‘전자파인체보호센터’ 지정 및 지원 근거 조항 추가
-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·시행 및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- 고출력·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

③ 전기통신사업법 (5. 21 위원회 보고내용과 동일)

-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개선 (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 시기의 불일치 해소 등)
- 기간통신사업 휴지·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
-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
-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

○ 추진계획

- 규제개혁위원회·법제처 심사 : '12. 7월
- 차관·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 : '12. 8월